

환경부 보도자료

2004년 4월 30일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☐ '04.4. 배포
- ☐ 사진없음
- ☐ 총 7쪽

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	방의석 과 장 최수근서기관	전화 (메일)	02-2110-6788 skc718@me.go.kr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환경부, 악취배출원 관리체계 대폭 개선

- ◇ 반월·시화지역 등 주요 공단지역의 악취 집중 단속
- ◇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악취취약지역 특별 관리

- ☐ 환경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의 창문을 대부분 개방하는 시점에서 반월·시화 등 일부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기상 영향으로 대기중에 정체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시·도에 악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.
- ☐ 반월·시화공단이 위치한 안산지역의 경우, 지난 4월 12일 이후 인근 염색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도시 주변 농지에서 사용되는 축분 등으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.
 - 현재 반월·시화공단에는 5,221개의 공장이 있으며, 이 중에는 지난 '80년대말 수도권에 산재한 중·소규모 공해배출업체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처리·염색·금속·화학 등 악취 다량발생업체만도 315개에 이르는 상황이며
 - 공단 설립 이후 배후지역인 안산시 고잔동, 시흥시 정왕동 등에 주거지가 집단 조성되어 구조적으로 환경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.

- 이러한 여건속에 환경부는 지난 98년이후로 악취·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, 폐기물 처리업체 등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시설개선, 소형소각로 폐쇄 등의 악취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, 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·단속권을 가진 경기도에서도 공단환경관리센터(23명) 및 민간환경감시단(31명) 설치·운영 등으로 악취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□ 환경부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악취저감 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악취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효과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하도록 금년 2월 9일 제정·공포한 악취방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령·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.

- 금년중 악취방지법 하위법령이 마련되면 악취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되어 악취취약지역을 시·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할 수 있게 되며,
- 지정악취물질의 경우 현행 8종에서 내년 2월부터는 13종으로, 2008년 2월부터는 톨루엔 등 5개 악취물질이 추가되어 18종으로,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3종으로 확대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시·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악취민원을 감안하여 엄격한 배출기준을 시·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.

□ 내년부터 이러한 악취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반월·시화지역 등 주요 악취취약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 단속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등 악취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
〈참고자료〉

붙임 : 1. 반월·시화 악취관리 대책

2.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제정(안)

3. 악취민원 발생지역도

< 붙임 1 >

반월 · 시화 악취관리 대책

1. 경 위

- 4월 12일 이후 안산시 고잔동 일대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안산시청 홈페이지 등에 제기(1일평균 23건)
- 송진섭 안산시장은 환경부, 경기도에 공단 단속권 이양 등 촉구
- 반월공단 인접 고잔동 · 초지동 주민들 악취고통 호소 보도(4.19, 4.20 한겨레신문, 4.21 문화일보, 4.23 한국일보)

2. 현장 조사결과

- 경기도(반월 · 시화공단환경관리센터)에서 조사결과(4.13)
 - 고잔동 · 초지고교 등의 민원은 반월공단 염색단지의 다림질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주공아파트단지 맞은편 밭(약 1,500평)에 뿌려진 축분시비 등의 악취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
- 환경부 담당서기관이 안산시청,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센터 및 악취 현장 등 방문, 현황 파악(4.20)
 - 공업단지와 고잔동 주거지역 사이 도로상에서 냄새 감지

3. 조치사항

- 경기도 주관으로 반월 염색단지 섬유업체(66개소)등 악취배출업소 집중단속 실시(4.15~계속)
- 축분시비 농경지 땅 갈아엎기 등 조치완료(4.16).
⇒ 평상시 수준의 상태로 회복
- 악취배출원 지도 · 점검등 관리강화 지시(환경부→시 · 도)

4. 공단단속권 위임관련 검토

가. 현 황

- '02. 10월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시·도로 위임
 - 현재 반월·시화공단은 경기도청에서 반월·시화공단환경관리센터를 설치(정원23명) 직접관리
 - 경기도 : 공단내 전사업장(1~5종), 공단외 1~2종사업장 관리
 - 안산시 : 공단외 4~5종 사업장 관리

나. 안산시 요구사항

- 배출업소관리권을 안산시로 재위임
 - 악취민원이 안산시로 제기되고 있으나 안산시는 단속권이 없어 신속대처 곤란

다. 검토결과

- 악취 등 배출업소 관리권은 시·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·군수에게 재위임 가능(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)
⇒ 경기도로부터 승인 요청시 검토 가능

5. 반월·시화공단 악취저감대책(경기도)

- 악취배출업소 집중지도점검 실시
 - 경기도 주관으로 공단내 악취배출업소 집중단속 실시
 - ※ 반월·시화공단환경관리센터(경기도) 직원 23명과 시흥시 및 안산시 공무원 각 2~3명씩 투입
- 주요 악취 배출업체 정밀조사 및 시설 개선
 - 폐기물 소각시설, 염색, 도로, 피혁 등 업체와 VOC 배출업체 등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(안산·시흥환경기술센터)
 - 2004년도에 경기도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

- 환경자동감시상황실 설치·운영
 - 대기오염측정망(9개소)와 굴뚝자동감시시스템(74개 설치) 등 연계 운영으로 집중 감시
 - 대기오염 감시차량(3대)을 이용한 순찰 강화
- 민간환경감시단 운영
 -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안산, 시흥 민간환경감시단(총31명)이 악취 발생원을 24시간 상시 감시
 - ※ 경기도에서 연간 3억 2,300만원 예산 지원

6. 향후추진계획

- 악취관리법 제정·시행으로 효과적인 악취저감대책 강구('04.2.9 악취 방지법 제정·공포, '05.2.9시행)
 - 악취관리지역지정 : 악취취약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규제 강화
 - ⇒ 반월·시화공단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
 - 악취배출시설 지정 : 현재는 대기배출시설과 생활악취시설로 구분하여 악취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로 통합
 - 지정악취물질 확대 : 현행 8종에서 '05. 2월부터 13종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3종으로 확대
 - 악취배출허용기준 개정 : 신규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범위 지정
 - 악취공정시험방법 제정(국립환경연구원) : 신설되는 지정악취물질의 측정방법 제정·고시

<붙임 2>

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제정(안)

1. 복합악취

구분	공장지역(회석배출)		기타지역(회석배출)		적용시기
	배출허용기준	엄격한 배출허용기준	배출허용기준	엄격한 배출허용기준	
배출구	1000 이하	500 - 1000	500 이하	300 - 500	2005년 2월 10일 부터
부지 경계선	20 이하	-	15 이하	-	

2. 단일악취물질

악취물질		공업지역 (ppm)	기타지역 (ppm)	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(ppm)	적용 시기
		악취세기 3.0	악취세기 2.5		
1	암모니아	2	1	1 ~ 2	2005년 2월 10일 부터
2	메틸머captan	0.004	0.002	0.002 ~ 0.004	
3	황화수소	0.06	0.02	0.02 ~ 0.06	
4	다이메틸설파이드	0.05	0.01	0.01 ~ 0.05	
5	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	0.03	0.009	0.009 ~ 0.03	
6	트라이메틸아민	0.02	0.005	0.005 ~ 0.02	
7	아세트알데하이드	0.1	0.05	0.05 ~ 0.1	
8	스타이렌	0.8	0.4	0.4 ~ 0.8	
9	프로피온알데하이드	0.1	0.05	0.05 ~ 0.1	
10	<i>n</i> -뷰티르알데하이드	0.03	0.009	0.009 ~ 0.03	
11	<i>i</i> -뷰티르알데하이드	0.07	0.02	0.02 ~ 0.07	
12	<i>n</i> -발레르알데하이드	0.02	0.009	0.009 ~ 0.02	
13	<i>i</i> -발레르알데하이드	0.006	0.003	0.003 ~ 0.006	
14	톨루엔	30	10	10 ~ 30	2008년 2월 10일 부터
15	자일렌	2	1	1 ~ 2	
16	메틸에틸케톤*	35	13	13 ~ 35	
17	메틸아이스뷰틸케톤	3	1	1 ~ 3	
18	뷰틸아세테이트*	4	1	1 ~ 4	2010년 2월 10일 부터
19	프로피온산	0.07	0.03	0.03 ~ 0.07	
20	<i>n</i> -뷰티르산	0.002	0.001	0.001 ~ 0.002	
21	<i>n</i> -발레르산	0.002	0.0009	0.0009 ~ 0.002	
22	<i>i</i> -발레르산	0.004	0.001	0.001 ~ 0.004	
23	<i>i</i> -뷰틸알코올	4.0	0.9	0.9 ~ 4.0	

<붙임 3>

악취민원 발생지역도

